

## 적하목록 전송료 KB당 40원 인하돼!

### - 협회 요청에 KTNET 수용으로 3억원 절감 -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5월 종전 킬로바이트(KB)당 370원을 적용하고 있는 적하목록 EDI 전송료 인하를 요청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이를 수용하여 2003년 6월분부터 330원으로 40원(10.8%)을 인하함으로써 우리 업계는 연간 3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협회에서는 지난 4월에 적하목록 EDI와 관련된 제비용을 조사하여 실무자회의(5.14)를 통해 적하목록 전송료, 통신망 사용료 등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청한 결과 EDI 전송료 요율 단가를 종전의 370원에서 330원으로 인하하여 7월부터 청구(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초 우리 협회에서는 적하목록 전송과 관련하여 현행 전송방식은 인터넷(웹) 방식임에도 이를 킬로바이트(KB) 단위로 환산하여 전송료를 산출·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통신망 사용료의 경우에도 한국통신(KT) 등의 통신망사업자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두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NET에서는 복운업체(포워더)에 부과하는 EDI전송료는 포워더가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 정보를 서류가 아닌 전자적인 데이타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KTNET의 EDI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로써『EDI전송료』 항목으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전송료는 포워더가 전송하는 전송방식(전화방식, X.25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등)에 상관없이 적하목록정보 전송에 따른 EDI시스템 사용료 부분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EDI전송료 산정근거는 포워더가 전송한 적하목록 데

이타량를 근거로 전송요율 단가(W370/KB)를 적용하여 전송량에 따라 할인하고 있으며, 특히 KTNET의 순이익 발생은 수출입자동화기본료로 인한 것으로써 수출입자동화 기본료는 EDI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초기 투자된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신고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무역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요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에서 비교·제시한 KT(한국통신)의 전용선 사용료는 KT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부문에 대한 요금체계이며, 포워더가 KT회선을 통해 데이터 전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 모두를 원할 경우 KT의『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해야 가능하며 동 요금은『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와 요금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포워더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기 위해 통신망(전용선)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포워더는 KTNET의 통신망이 아닌 타 통신망 서비스 제공회사(KT,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를 선택하여 전송해도 무방하므로 통신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하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KTNET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내에 SDSL환경의 통신망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세관 EDI신고 등 회선을 많이 이용하는 피크타임 시간대에는 회선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져 지난 5월말에 화물터미널별로 전용회선을 추가적으로 증설하였으며, 아울러 올해말까지 화물터미널별 회선속도를 현재의 8Mbps에서 45Mbps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내 입주업체의 통신회선 속도를 현재의 512K에서 T1까지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을 밝혔다. ●

## 최다 회원으로 제 4기 KASA 출범

**미**국지역의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사들 간의 화물량(Cargo volume)을 대형화하여 북미항로 운항선사와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체결시 개별 회원사 보다 유리한 운임을 제공받기 위해 미국해운개혁법(1998 US Ocean Shipping Reform Act)에 의거, 조직된 KASA(Korea-America Shippers' Association)에 모두 52개사가 참가하여 새로이 출범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여 올해로 출범 제4기를 맞는 KASA에는 지난해 제3기의 40개 회원중 6개사가 탈퇴하고 18개사가 신규로 가입하여 총 52개 회원사는 내년 4월까지

현재까지 S/C를 체결한 CMA-CGM Line, China Shipping, COSCO, ZIM Line, Westwood Shipping 등 5개사에 3,500~5,000TEU를 선적할 예정이다.

제1기(2000. 5~2001.4) KASA는 2,702TEU를 선적하였으며, 제2기 2,332TEU, 제3기는 모두 2,500TEU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제3기 회원중 선적실적이 우수한 ▲남성해상(대표 지홍식), ▲아트라스해운(대표 정호성), ▲가나해운(대표 이기보), ▲유라시아라인(대표 손경진), ▲유니트란스(대표 문영학) 등 5개사에 대하여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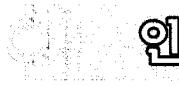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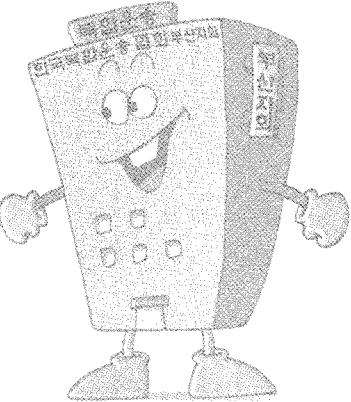
## 협회, 부산지회 사무실 개소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9일 송정섭 회장을 비롯하여 부산지회장인 김병진 부회장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부산 중앙동 4가 부산마린센타 902호에 부산지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개소식에서 협회장은 『부산지역 회원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회사무실을 갖게 되고 상근직원의 충원으로 협회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지회 사무실이 개소될 수 있도록 힘써준 부산지회장 등 관계자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다.

이에 대해 김병진 부회장은 『부산지역 회원사들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으로 잘 활용해 복합운송과 관련된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고, 또한 현장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1 부산마린센터 902호
- ◆ 전 화 : 82-51-468-7007 / 전송 : 82-51-468-7730



## 인천공항 구내영업료 부과 법적근거 논란

### - 인천공항공사의 부과계획에 전 물류업계 반대해 -

항공법 및 공항시설관리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 구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내영업료 부과계획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복합운송업계를 비롯한 항공화물취급 관련 모든 물류업계가 구내영업료 부과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인천공항공사의 구내영업료 부과계획과 관련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단, 건교부장관에게 신고)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징수대상, 항목,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인천공항공사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구내영업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항공법 제86조(사용료) 및 공항시설관리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9호) 제12조(착륙료 등)의 어느 조항에도 구내영업료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2001.3.28) 제4조(사용료산정 및 청구)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구내영업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부과대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복운업체는 인천공항내의 화물터미널 시설 사용과 관련 인천공사의 사무실이 아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3자인 인천공사가 직접 복운업체에 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천공사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그 대상의 결정여부는 공항시설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주체인 공항공사가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업계의 공항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외항공사, 조업사,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및 복운업체 등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내 모든 상주업체들은 지난 5월 동 영업료부과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천공항공사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의 사업손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내영업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며, 법률적으로도 부과 징수근거인 항공법 제86조 및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비행장』과 『항행안전 시설』로 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명령에서 법률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공항시설』까지 확대한 것은 공항공사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내영업료 부과계획 철회를 건설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에 지난 5월 28일 전의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당초 금년 2/4분기부터 부과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하였으며, 2004년부터 부과요율에 대해 관련업계와 협의한 후 내년부터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협회를 비롯한 공동 협의체에서는 이의 전면 부과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대단위 복운업체 전용 항공창고 건립 추진

-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내 3만4천평부지에 -

**인** 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내 약 3만4천평의 부지에 대단위 복합운송업체 전용 항공화물창고가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확정한 관세자유지역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제5활주로 인근에 약 30만평 규모의 제1단계 사업에 오는 2005년 6월까지 항공화물창고 7만 8,621m<sup>2</sup>(약 2만3,800평), 장기항공화물창고 3만4,432m<sup>2</sup>(약 1만400평) 등 총 3만4,000평의 부지에 최대 규모로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을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복합운송업체 전용 대단위 항공화물창고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항공화물의 취급은 물론 중국발착(發着) 화물, 특히 산동성·요령성·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화물을 적극 유치하여 수익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물류전문업체로 재도약하고 더 나아가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기지 허브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대단위 항공화물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외국의 터미널 전문개발사업자(developer)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부는 회원사의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창고규모는 인천공항공사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따라 최대 규모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주)팍스글로벌카고 김종욱 대표이사를 복운업체 전용 항공화물창고 건립추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은 오는 2020년까지 약 6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데, 1단계로 구성되는 30만평 중 물류시설의 경우 약 14만2천평이며 이 중 토지임대료의 경우 관세자유



지역 조성원가에 의한 토지임대료가 연간 약 26,315원/m<sup>2</sup>이지만 주변 경쟁국가와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국 상하이 보세구와 비슷한 수준의 기본임대료(10,500원/m<sup>2</sup>)를 산정해놓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입주업체가 상부건축물을 건축하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BOO(Build Own Operate)방식이 적용되며, 전매 또한 가능하다.

한편 관세자유지역이란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통관 절차, 관세 및 제세 공과금 등의 면세특전이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됨에 따라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아직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반면 관세자유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 부터는 관세법이 적용되므로 관세자유지역을 거쳐서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수입세제를 부과하게 된다. (18면 자료Ⅱ 참조)

## 화물기 탑재화물은 보안검색 완화해야

-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건교부·국회에 건의 -

**항** 공화물에 관한 전량(全量) 검사를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안)과 관련하여 여객기가 아닌 화물기에 기적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함을 지난 4월 23일 건교부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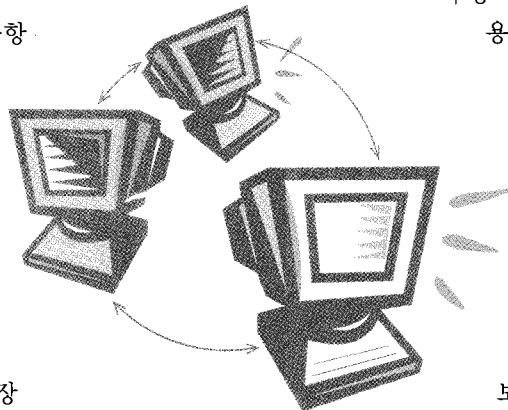
우리 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안)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물류비용의 추가 발생

및 적기수송 차질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항공화물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이는 곧 국가경쟁력 상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특히 반도체·전자장비 등의 주요 항공화물은 촌각을 다투는 것으로 이들 화물 모두를 여객기, 화물기 구분없이 전량 X-ray 검사 등을 실시할 경우 시간의 지체를 가져와 적기운송이 어려운데다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이나 선진외국에 앞서 화물기에 기적하는 화물까지 전량 검사를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을 지적했다.

지난 2002년 8월에 공포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세부운영지침(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여객기 또는 화물기로 운송하는 화물은 보안장비에 의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항공기에 탑재해야 하며, 검색을 포함한 적절한 보안 통제를 받은 화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품도 운송할 수 없고 또한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화물검색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보안검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모든 화물을 자체 보유한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인가된 보안검색 요원에 의해 검색, ▲이러한 보안검색장비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한 요건을 준수하는 장비사용, ▲검색대상화물은 포장단위별로 나누어 검색, ▲화물의 내용물과 신고된 선적서류와 일치여부를 확인, ▲X-ray 장비 등에 의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신고된 화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화물은 개봉검색, ▲항공사와 정규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화주 또는 운송업체의 화물 접수시 반드시 신분확인 후 접수 등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운영지침이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며, 특히 X-ray 투시가 되지 않는 BUC 화물이 전체 수출화물에서 15% 정도를 차지해 복운업체 및 화주에게 미치



는 물적비용 등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복운업체가 수출화물을 작업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하여 주차장 또는 구내도로상에서 화물분류, 적하작업 등을 하고 있는 업계의 여건으로 볼 때 현실적인 수용이 불가능함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동제도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항공화물 업계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물류비용 추가발생 및 적기운송 불가로 수출항공화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에 탑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상용화주제(Known -shipper : 보안규정 준수각서제출화주 보안검색 면제방안)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

## 인천시, 복합운송업 육성에 적극 나서

### - CFS 무상지원 · Sea & Air 시스템 구축 등 -

**인**천광역시는 동북아물류중심도시 선점을 위해 물류산업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일정기간 CFS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Sea & Air 복합물류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항만공항물류시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대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물류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운송·주선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Fowarding)을 유치함으로써 물류중심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포워더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화물혼재(consolidation)에 반드시 필요한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을 인천항 4부두 배후지역에 조성하여 인천등록 복운업자에게 일정기간(2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한 Sea & Air 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운 및 항공 물류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인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천을 대(對)중국교역의 거점으로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2003.6~2004.4)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등록업자 및 수도권지역 복운업자를 위해 시에서 일정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개별사무실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리 협회 제3차 이사회(6. 23)에 변천수 항만공항물류과장이 참석하여 이러한 항만공항물류시책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앞서 금년부터 새로이 인천시에 항만공항물류국을 설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을 위해 포워더 초청 간담회, 인천복합운송협의회 창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16면 자료 I 참조) ☺

## 협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 3월 31일, 운영·해운·항공·재무등 4개 위원장 선임 -

우리 협회 정관 제2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제1차 회장단회의에서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위원회별로 위원을 선임했다.

운영·해운·항공 및 재무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장은 ▲운영 차미성 부회장, ▲해운 김인환 부회장, ▲항공 강성린 부회장, ▲재무분과위원장은 이우종 부회장이 맡기로 하였으며, 해운·항공·재무분과위원회가 각 1차례씩 개최됐다.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차 해운분과위원회에서는 정기총회 및 이사회(3. 10)의 결의와 같이 해운분과위원회내에 이주화물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으로 (주)범양익스프레스 차주영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또한 지난 2001년에 구성된 바 있는 북방소위원회(위원장 박경호 ; 대아트란스 대표이사)를 존속시키되 동위원회는 남북관계 등 정치적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활동을 유보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제1차 항공분과위원회(5. 19)에서는 복합운송업계 전용 항공화물창고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외항사터미널 동측 부지의 창고 건립은 건교부에 우리 업계의 임차 수요를 통보하여 인천공항공사에서 건립하여 복운업계에 임대하도록 하였으며, 관세자유 지역내 전용 항공화물 창고 건립추진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주)파스글로벌카고 김종우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9일 개최된 제1차 재무분과위원회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회원사에 대한 처리방안, 회비 및 가입비 미완납 회원사에 대한 대책, 예비비 사용승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다. ●



### 각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운영분과위원회	해운분과위원회	항공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위 원 장	차미성	동보해운항공	김인환	백스글로벌			
위 원	가야쉬핑 경인해운항공 대일해운항공 동남Express 동천항운 두성해운항공 SDV코리아 우성항운 천지해운 코스모항운 티오피해운항공 피플엔드로지스틱	정계성 이상용 강택구 성낙청 김순호 로이드해운 윤석우 이익노 최종원 아트라스해운 유경규 박종만 이재인	가야쉬핑 경인해운항공 대아트란스 대일해운항공 강택구 로이드해운 윤석우 삼조해운항공 아트라스해운 유라시아라인 천지해운 남기영 박종만 티오피해운항공 창대종합물류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조회열	E I 코리아	조희열	E I 코리아	김지일	김지일	ABX해운코리아	김영진
정호성	일양Express	정호성	일양Express	조인구	조인구	오리온해운항공	오유수
최종원	케리항운	최종원	케리항운	홍성호	홍성호	E I 코리아	김지일
손경진	코스모항운	손경진	코스모항운	여경규	여경규	케이인뎁항공해운	김성호
남기영	팍스글로벌	남기영	팍스글로벌	카고	카고	김종욱	한호항공
박종만	한생해운항공	박종만	한생해운항공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철영
정윤현	호성국제운송	정윤현	호성국제운송	김호길	김호길	김호길	김호길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추가 감면 어려워

### - 공항 상주자에 대한 주차료 할인율 축소도 불가피 -

**인**천국제공항 상주종사원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정과 인천공항 주차료 할인율 축소는 불가피해 향후 해당 종사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인상 적용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공항상근자에 적용되던 요금 3,000원에서 4,100원(16인승 이하)으로 36.5% 인상은 일시에 너무 많이 인상되어 많은 비용부담을 안게되고, 특히 수출항공화물의 국제경쟁력 및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대하므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복합운송업체 및 종사자 소유의 승용차 및 화물차는 통행료를 항상 정상 요금에서 50% 감면된 요금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지난 5월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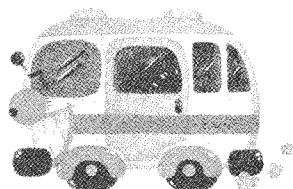
이에 대해 건교부는 통행료 조정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에 따라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분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신고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의 통행료 인상은 2000년 11월 개통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아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만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수입감소분은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여야 함에 따라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6.11).

특히, 인천공항 종사자에 대해 동 도로의 통행료 일부를 할인해주는 취지는 공항개항후 공항종사자를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실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공항개항시 1년간만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공항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2년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매년 감면폭을 축소하여 오는 2005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 내용을 공항 상주기관에 이미 통보한 바 있

어 공항종사자에 대한 추가인하 및 화물차 통행료 인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적용될 인천공항 상주종사원에 대한 정기 주차요금 할인율이 기존 75%에서 50%로 축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인천공항으로의 이전에 따라 김포공항에 비해 부대비용이 20~30%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반 물류비용이 추가 또는 계속 상승되므로써 업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에 주차료 할인율 75%를 50%로 축소하는 것은 100% 인상효과가 있으므로 단계별로 매 2년마다 할인율을 10%로 축소 적용하여 줄 것을 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사에서는 인천공항 개항이후 현재까지 상주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에 대하여 정기주차요금을 75% 할인하여 왔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열악한 재정구조 및 주차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항초기 공항종사자의 심적·물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이었으나 개항후 2년이 경과한 지금은 공항상주직원이 안정화된 공항운영 및 대중교통에 적응하였다고 판단되며, 주차장 시설의 운영관리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정기주차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우리 협회의 의견 반영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5.13). ●



## 2003 FIATA 총회 「印泥발리」 개최예정

### -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

**2**003년도 FIATA 세계총회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물류와 공급사슬에 있어서 포워더의 역할』(Role of the Forwarders in Logistics and Supply Chain)이라는 주제의 이번 2003 FIATA World Congress는 Nusa Dua의 발리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공식회의로는 개·폐회식을 비롯하여 아태지역회의, 회장단회의, 이사회, 홍보·법

률·직업훈련·위험품자문기구회의, 통관·항공운송·복합운송분과위원회, 포럼, 전체회의 등이다.

이외에도 공식 개회식에 앞서 9월 29일에는 친선골프대회가 열리며, 환영연·연회·폐회연회·오찬3회·동반자프로그램(3회)·선택관광 등의 다양한 사교행사가 곁들여지는 이번 총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등록시 참가자 1인당 미화 825불이며 동반자는 600불이다. ●



## 『복운업체』를 국제물류전문기업으로 육성해야

### - 동북아경제중심委 물류전문위원회를 통해 -

**우**리 협회는 실제로 국제간 일관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를 통관취급법인 대상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전용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복운업체를 국제물류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동북아경제중심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0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 배순훈 KAIST 테크노대학원 교수)의 제1차 물류중심전문위원회(위원장 : 이재희 유니레버코리아 회장) 이후 동북아물류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만·공항 등 물류기반시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법체계 개선을 통한 불 필요한 행정의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즉, 복운업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관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통관취급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복운업체가 명실상부한 국제물류전문업체로서 일관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세행정 규제를 완화할 것과 인천국제

공항에서 복운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하여 항공사 터미널에 집중되어 혼잡과 사고위험성이 있으므로 복운업체 전용 물류창고의 조성 지원이 절실히 지적했다.

이외에도 우리 협회는 인천공항의 Sea & Air 종합물류체제 구축방안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화물터미널 구내영업료, 항공화물 보안강화 등은 인천공항의 물류허브화에 직·간접적인 저해요인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류중심전문위원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제기했다.

한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당연직 11인(국무위원)과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4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별 전문위원회는 제도개혁·혁신클러스터·외국인투자유치·물류중심·남북/대외협력 등 5개이며, 물류중심전문위원회에 우리 협회 정영진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3분기 협회연수교육 총7개과정 실시예정

### - 오는 9월엔 해상·항공교육 부산에서 -

**보**합운송업계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2003년도 3/4분기 우리 협회 연수교육은 해상포워딩단과반교육을 비롯한 7개과정으로 총 9회 실시될 예정이다.

2003년도 3/4분기 연수교육은 7월 3일부터 해상포워딩 단과반교육을 시작으로 7월 11일 항공단과반, 7월 21일 통신영어교육, 7월 24일 영업실무교육, 7월 26일 C/S예절교육 등이 각각 실시된다(표 참조).

또한 부산지역 회원사 종사원을 위한 해상포워딩부산교

육이 9월에 실시되며, 특히 항공포워딩부산교육이 금년에 처음 도입되어 역시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4분기에는 포워딩영업실무교육(4.8, 5.21)을 2회 실시하여 총48명이 수강하였고 C/S예절교육(4.12, 5.10, 6.14)에 총122명, 해상포워딩단과반(4.21~25)에 48명, 항공포워딩단과반(4.28~5.6)에 34명, 포워딩실무통신영어교육(5.29~30)에 39명, 해상포워딩기초반(6.2~16) 및 항공포워딩기초반(6.18~7.1)에 각각 46명, 22명이 수강하였다.

### 2003년도 3/4분기 교육훈련계획

교육 과정	교육 기간	교육 시간	수 강 료 ( 원 )	지원금액(고용보험)		비 고
				우 선 지 원	대 규 모	
해상포워딩단과반	7. 03 ~ 7. 09	20	₩ 80,000	₩ 62,730	₩ 55,760	
항공포워딩단과반	7. 11 ~ 7. 18	20	₩ 80,000	₩ 62,730	₩ 55,760	
포워딩실무통신영어	7. 21 ~ 7. 22	8	₩ 20,000	-	-	
포워딩영업실무	7. 24	4	₩ 10,000	-	-	
C / S 예 절 교 육	7. 26	4	₩ 10,000	-	-	
포워딩실무통신영어	9. 04 ~ 9. 05	8	₩ 20,000	-	-	
C / S 예 절 교 육	9. 06	4	₩ 10,000	-	-	
해상포워딩단과반	9. 15 ~ 9. 19	20	₩ 80,000	₩ 62,730	₩ 55,760	
항공포워딩단과반	9. 22 ~ 9. 26	20	₩ 80,000	₩ 62,730	₩ 55,760	
해상포워딩부산교육	9. 01 ~ 9. 04	28	₩ 140,000	₩ 98,355	₩ 87,427	예 정
항공포워딩부산교육	9. 15 ~ 9. 17	21	₩ 120,000	₩ 73,766	₩ 65,570	예 정